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4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1) 기금 설치의 배경 및 필요성	8
(가) 국가간 방산수출 경쟁 심화	8
(나) 현행 방산육성 및 수출 지원제도의 한계	11
(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	19
(2) 기금 설치 시 고려사항	21
(가) 현행 재정지원 제도 및 기금의 용도와의 관계	21
(나) 전략수출금융기금에 관한 법률안 등 심사경과 고려	27
(다) 과도한 부담금 문제	29
(라) 기금 운용주체의 적정성	34

(마) 관계부처 의견	36
(3) 소 결	36
2. 조문별 검토	38
※ 참고자료	49
1. 2025년도 기금 운용 현황 자료	49
2.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상품(대출보증 포함) 현황	5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 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

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기금으로 용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

-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
-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함.

[제정안의 주요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기금 설치 목적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 촉진
기금의 재원	민간 부담금+정부출연·융자금+기술료+기금운용수익 등
기금의 사용용도	• 방위산업체 대상 자금 용자, 출자 및 채무 보증 •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대상 자금 용자 • 수출금융 지원 • 방산육성·수출진흥 목적 펀드투자, SPC·SPV 지원 등

구 분	내 용
민간 부담금 신설	• (부과대상) 방산업체 영업이익 & 방산 수출액기준 • (부과요율) 부과대상의 최대 1%로 하고 대통령령에 구체적 요율 위임을 위임
거짓·부정한 지원금 수령 제재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금회수,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원받은 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기금의 운용주체	국방부 / 방위산업전문금융기관이 위탁운영

□ 제정안은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설치
제4조	기금의 채원
제5조	부담금
제6조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	기금을 운용하여 필요시 차입 가능
제8조	기금의 용도
제9조	국방부장관이 기금 관리·운영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운영

조	제 목
제11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12조	회계연도
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5조	기금의 이익과 결손처리
제1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7조	기금의 감독 및 명령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기금 설치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국가간 방산수출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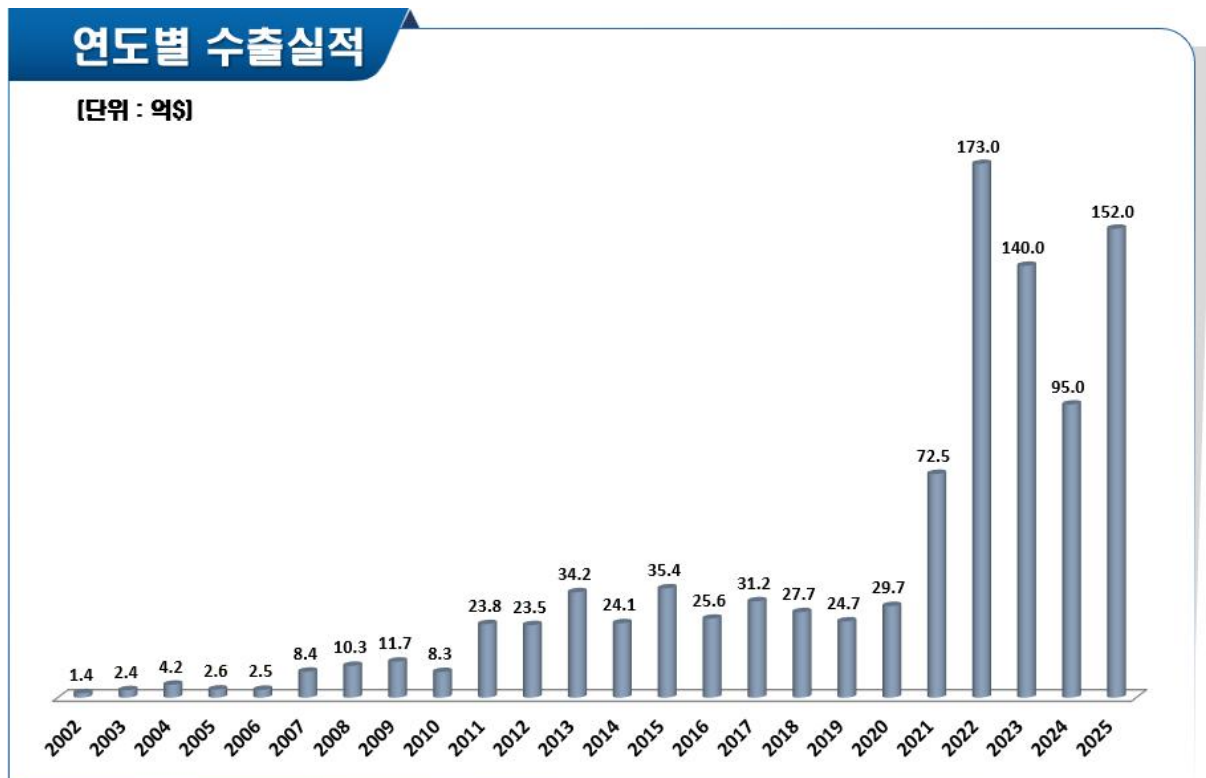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요 방산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¹⁾ 한국 방위산업은 무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²⁾

최근 10년간 방산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2016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95억 달러를 거쳐 2025년 152억 달러로 다시 크게 확대되는 등 상승 흐름이 재확인되고 있음.

1) 2025년 폴란드와 K2 2차(약 65억달러)·천무(39억달러) 등 대형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신속한 납기·가성비 및 현지생산·후속군수(MRO) 패키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 중심 성과를 발판으로 중동·아시아 등으로 수출처를 넓히는 다각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방산 4대강국 진입 목표를 구체화하는 중임.

2) 이지윤, 조원호 (2025)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32:3, 165-182

[최근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또한 우리나라는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방산부문 총매출액 26조 7,748억원에서 방산부문 수출실적 8조 7,14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임.

이는 그 만큼 방산업체에서 무기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방산수출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방산업체의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방산매출액	153,517	158,801	168,300	201,950	267,748
해외수출액	18,150	16,312	23,408	47,988	87,149
수출액 비중	11.8%	10.3%	13.9%	23.8%	32.5%

* 자료: 2024 방산업체 경영분석(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방산부문 수출실적 8조 7,149억원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5개사)이 7조 1,812억원(82.4%)을 수출하였고, 중견기업(16개사)은 1조 3,102억원(15%), 중소기업(21개사)은 2,235억원(2.6%)을 수출하였음.

[기업규모별 방산부문 수출실적]

(단위: 개사, 백만원, %)

구 분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업 체 수	15	16	21	52
수 출 액	7,181,176	1,310,215	223,542	8,714,933
수출비중	82.4	15.0	2.6	100

* 자료: 2024 방산업체 경영분석(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방산수출의 호황을 맞고는 있으나 국가간 무기수출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유럽공동체는 자국산 무기 우선구매정책³⁾ 및 비유럽공동체 국가의 무기 규제·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미국 등 방산수출 선진국은 보증, 보험, R&D 비용 면제 등 다양한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간 방산수출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⁴⁾

(나) 현행 방산 육성 및 수출 지원제도의 한계

□ 방산수출 증가에 맞추어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3)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정책이 공식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방산 조달에서 유럽 제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미국 등 비EU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4) WTO 체제에서 정부의 무역지원은 금지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안보, 방위산업분야는 지원을 허용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⁵⁾에서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군수품 국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 용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3조⁶⁾에서는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⁷⁾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현재는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과 정책펀드사업(방산 기술혁신 펀드, K-방산 수출 펀드) 등을 통해 방산업체등에 재정·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용자)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용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용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용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이외 제10조에서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국방연구개발, 군수품의 품질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제15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위사업청 재정·금융지원사업 운용 현황 및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운용 현황 ⁸⁾	연도별 실적					
		실적	2021	2022	2023	2024	2025.12.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2025년 말 기준 신규 187개 업체에 6600억원 규모의 용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수	135	0	0	179	187
		지원액	6,638	10,709	13,764	15,362	15,513
방산기술 혁신펀드	2022~2036년간 기술우수 기업 투자를 위해, 총 1,3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기업수	-	-	4	7	17
		지원액	-	-	8,000	14,297	27,411
K-방산 수출펀드 (’25년 신규)	2025~2038년간 수출유망 기업 투자를 위해, 총 1,6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예정) * 민간자금 매칭에 따라 규모 확대 가능	기업수	-	-	-	-	-
		지원액	-	-	-	-	-

* 자료: 방위사업청

□ 현재 운용중인 재정·금융지원 제도와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음.

첫째,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산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⁹⁾을 2006년 방

8) 방위사업청 재정지원사업의 재원 구성 방식

구 분	재원 구성 방식
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금 : 정부재정(국비) 100%
방산기술혁신펀드	· 모펀드 : 예치은행 출자금(민간) 50% / 자펀드 : 민간자금 매칭 50%
K-방산수출펀드	· 모펀드 : 정부재정(국비) 50% / 자펀드 : 민간자금 매칭 50%

9) 이차보전제도 개요

- 방산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이자의 차액(이자)을 보전해주는 제도임.
- 2개 내역사업 구성
 - (방위산업체 이차보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의 이자 차액 지원
 - (국방중소기업 이차보전)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의 이자 차액 지원
- ’26년 사업 예산 : 229.62억원 (+ 44.49억원)

산육성기금 폐지¹⁰⁾ 이후 그 대안으로 도입하여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신규 용자 규모나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음.¹¹⁾

그러나 최근 5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 및 2023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지원(계속사업) 외 신규 용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산출·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최근 5년간 이차보전사업 운영현황]

(’25.12. 기준 / 단위 : 억원, 수)

연 도 구 분	’21	’22	’23	’24	’25
예산	93.2	90.4	109.9	181.4	185.1
신규 용자규모	3,304	-	-	2,656	6,673
지원업체 수	135	0	0	179	187

* 자료: 방위사업청

요구 내용	’25 예산	’26 예산
방위산업 이차보전	185.13억	229.62억 + 44.49억
(내역1) 방위산업체 이차보전	60.29억	63.24억 + 2.95억
(내역2) 국방중소기업 이차보전	124.84억	166.38억 + 41.54억

10)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부칙

제7조(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11)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사후관리 등의 업무지원, 정책펀드 관리기관의 업무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12조에서는 금융지원에 대하여 ‘장기 저금리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으며, 실제 관련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함.

둘째, 방산업체들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방산 수출에 필요한 채무보증¹²⁾을 제공받을 수 있음.¹³⁾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 대상 여신한도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기자본 40% 규모로 대규모 금융지원 곤란한 실정임.¹⁴⁾

또한, 2024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¹⁵⁾으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25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동일차주 여신한도는 확충된 자본의 40% 수준으로만 상향되어 추가 출자 대비 금융지원 수요자 입장에서의 한도 상향 효과는 제한적임.¹⁶⁾ 이로

12)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함.

13) 참고자료 2.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상품(대출보증 포함) 현황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 전·후 자기자본 비율 규정]

구분	수출입은행 법정 자기자본	동일차주 여신한도(자기자본 40%)
2024. 3. 19. 개정 전	15조	6조
2024. 3. 19. 개정 후	25조	10조

16) 무역보험공사도 마찬가지로 동일주체 대상 여신한도 제한 규정이 있음(무역보험공사 리스크관리규정 제13조제2항)

* (국내기업) 무역보험기금 순자산총액의 50%(약 1.27조원, '25. 4/4분기 기준)

인해 대규모 무기수출계약의 상대국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음.¹⁷⁾

수출입은행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선박, 건설플랜트,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여신을 제공하고 있어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우선적·대규모 금융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실제 방위산업이 제공받는 여신액 규모는 2025년 기준 4.7%로 타 산업 대비 크지 않은 수준임.

[전체 집행금액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현황¹⁸⁾]

산업	2023년	2024년	2025년
선박	15.9%	17.1%	19.3%
건설플랜트	11.4%	10.0%	11.1%
전기전자	11.1%	11.5%	9.9%
석유화학	10.0%	8.5%	6.4%
자동차	9.2%	8.7%	9.9%
방위산업	<u>1.5%</u>	<u>6.1%</u>	<u>4.7%</u>

*자료: 수출입은행

* (국외기업) 미화 25억달러

17) [폴란드 제2차 무기구매계약 사례]

폴란드는 제2차 K9자주포·천무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 제1차 계약 당시 이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여신을 제공받았으므로, 추가 정책금융지원 여력이 부족하였음(수은 동일차주 지원 한도 등).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지원을 받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위산업 분야 수주119 간담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5. 6. 24., 41면, 42면)

18) 한국수출입은행, 추미애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최근 5년간 품목별 여신현황(집행금액 기준)”

셋째, 2025년 9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75조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¹⁹⁾이 조성되었으나, 동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함에 따라 방산수출 분야 특화 대규모 자금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결정 시 산업의 경제성·민간 수익성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다른 산업과 달리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비용지출·투자 및 회수의 관점에서 특수성을 띠는바 우선순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넷째,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 공제(보험)사업 및 그 밖에 조합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⁰⁾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

19)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이하 생략)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금 등의 구매알선
6. 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행하며, 조합에 대한 정부 출연금 또는 별도 예산은 없음.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수출 필요한 보증사업(제 21조제1항제1호)을 수행할 수 있는데,²¹⁾ 현재 자본금 규모 및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채무보증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수행중인 보증사업 종류]

구 분	보증내용
입찰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입찰참가 시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계약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지급보증	선금, 착·중도금 및 기성대가의 반환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납품 후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관급품 위험보증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제공된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출보증	조합원의 수출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이행 보증

*자료: 방위산업공제조합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1) 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금의 채무보증을 포함하는 기능이나, 공제조합은 실제 채무보증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입찰보증·입찰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사업(제21조제1항제5호) 않고 있음. 다만, 조합원의 편익 증진 사업(제21조제1항제7호)의 일환으로 자체 출자금을 운용하여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조합원 대출이자 지원(이차보전) 사업²²⁾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5년도 자체 예산은 3억원으로 지원 수준이 미미함.

□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금융지원 체계는 방산수출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즉, 정책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는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수출계약에 대한 유연한 지원에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은 미흡한 위험 분담 체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방산수출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²³⁾

또한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22)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운영·시설자금 등 융자 시 대출이자의 1.25%를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지원함.

23) 이지윤, 조원호의 앞의 논문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²⁴⁾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함.²⁵⁾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탄력적·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임.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방산수출 실무에서 수입국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중요한 협상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고, 수출국 정부가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금용자를 지원하는 연불수출금융 등 장기대출·저금리 금융지원²⁶⁾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²⁷⁾

24) 특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함.

25)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이 가능함.

「국가재정법」 제70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이하 생략)

26) 다만, 제정안 제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연불수출금융 등 장기대출·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26페이지 및 43페이지 참조)

27) 특히 수입국의 장기·저금리 금융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출금융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술력이나 품질 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좌절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폴란드와의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규모 1차 수출계약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더불어, 한국 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중요한 계약 성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이 있음(이지윤, 조원호의 앞의 논문)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통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제정안과 유사한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설치 사례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²⁸⁾ 정보통신진흥기금²⁹⁾ 등이 있음.

(2) 기금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행 재정지원 제도 및 기금의 용도와의 관계

□ 제정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28)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이하 생략)

제50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4. 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하 생략)

2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위한 개발,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출자(제1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제2호),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제3호·4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또
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방위산업체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
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다.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바.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

사. 방위산업체의 운영

아.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자.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희화된 방위산업물

자등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차.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방위산업체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
 3. 방위산업체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4. 방위산업체등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사항을 위하여 구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제1호 자금융자 사업과 제2호 이차차액지원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과 지원대상 및 용도가 같음.

[현행 이차차액지원사업과 제정안의 이차차액지원사업 비교]

구분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현행)	이자차액지원사업(제정안)
근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8조제1항제2호
재원	일반회계	기금
대상	방산업체 등(중소기업 우선지원)	방산업체 등(중소기업 우선지원)
용도	방산시설 설치, 원자재 구매·비축, 국산화, 수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 및 이차지원	방산시설 설치, 원자재 구매·비축, 국산화, 수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차지원
예산	229억 원('26년)	-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 방지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보전사업은 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사업 조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제도로 이차보전사업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인프라 조성사업, 방산고도화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제도들은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아니지만 매년 고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기금사업으로의 편입 등 운영방식의 조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제도 예산액]

(단위: 억원)

분 야	사업명	‘26년 예산액
방위산업 육성	①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53.08
	② 방위산업 이차보전	229.62
	③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697.60
	④ 방산고도화지원	1,396.06
	⑤ 방산수출 투자지원	300.05
방위산업 수출지원	⑥ 시장조사·분석	3.87
	⑦ 유망수출품목발굴	13.58
	⑧ 무기체계 개조개발	626.38
	⑨ 군 시범운용	(업체부담)
	⑩ DQ마크인증	1.33
	⑪ 방산전시회 지원	21.68

□ 제3호 및 제4호 채무보증 사업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방산업체등의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 수출과 관련하여 방산업체등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음.

제정안의 기금 신설을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할 경우 채무보증 기관 다양화로 방산업체등의 보증료 부담 감면 등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기능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5호 투자지원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중인 K-방산수출펀드(예산사업), 방산기술혁신펀드(비예산사업) 등과 유사한 내용임.

현재 조성된 펀드와 별개로 제정안의 기금 설치·운영을 통한 방산업체의 투자 및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정책펀드의 기능이 기금에 포함되거나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및 정비가 함께 필요함.

- 한편, 제정안 제8조제1항 각호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연불수출금융 등 장기대출·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앞선 본 바와 같이 방산실무에서 수입국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중요한 협상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고, 수출국 정부가 동 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용도에 동 사업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³⁰⁾

30) 20페이지 및 43페이지 참조

[현행 정책펀드와 제정안의 투자지원 비교]

구분	K-방산수출펀드, 방산기술혁신펀드	투자지원(제정안)
근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8조제1항제5호
재원	일반회계, 민간출자	기금
대상	방산업체 및 방산유망 중소기업	방산업체 등
용도	기업 지분투자	기업 지분투자
예산	300억('26년, K-방산수출펀드)	-

(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심사경과 고려

□ 이 제정안³¹⁾과는 별도로 현재 방위산업 분야 지원을 포함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³²⁾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상호 간 충돌 및 중복 지원·규제 문제를 피하고, 관련 기금운용의 체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두 법률안의 심사경과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1) 수출진흥기금법안 제정을 위한 국방부 연구용역 추진 경과

○ (추진배경) 방위산업의 발전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 수출형 무기체계의 개발 촉진, 수출금융지원 재원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재원 신설 관련 연구용역 추진

*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25조)의 40%, 무역보험공사는 25억불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방산수주 규모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 증대

○ (주체/기간) 한국정책학회 / '25.4~11.(7개월)

○ (연구용역 결과) 방산기금 설치 시 방위산업의 성장과 방산수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생적으로 기능하는 기금 운용 가능

32) 한정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216289, '26.1.23.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및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목 적	방산, 원전, 조선, 해양플랜트 등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	방산 육성, 방산물자 수출 진흥 등에 재정 지원으로 성장을 도모
재 원	정부 출연금 +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 수혜기업 상생기여금 + 기술료 + 차입금	정부 출연금 + 정부 외 출연금 + 수출진흥 부담금/가산금 + 기술료 + 차입금
재원운용	-(수출금융지원계정) 수은·무보 지원이 곤란한 대규모, 장기·저신용 사업 -(생태계지원계정) 자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출자·투자	*통합운용
기금 조성방안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상생기여금으로 납부, 기금 재원으로 활용	방산업체 및 방산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일괄적 부과·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
운영체제	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 심의회」를 설치	국방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 또한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재정법」³³⁾ 및 「부담금관리 기본

3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법」³⁴⁾에 따라 반드시 별표의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³⁵⁾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과도한 부담금 문제

□ 제정안 제4조는 방산수출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 부담금 및 가산금, 차입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부담금³⁶⁾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는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방산관련 일반업체 등이 방산물자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부담금은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35) 이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추미원의원이 대표발의함.

36)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있음.

제정안처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특정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³⁷⁾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³⁸⁾ 등이 있음.

[제정안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

37)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권(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권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부터 방위산업 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이하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생략)

반면, 방위산업 분야 지원이 포함된 「전략수출금융기금에 관한 법률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부담금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수출 상생기여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부과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협력과 대응구매로 인해 수출이 성사된 경우 ‘집행금액과 1,0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 제5조제1항에서는 ‘방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부담금 입법례³⁹⁾나 「전략수출금융기금에 관한 법률

안」의 기여금과 비교하여 고액의 부담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닌 ‘결산상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여금〕

제5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의2(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39)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광업법」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제4조(징수금의 제한)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이 실제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금액(단,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으로 본다)과 1천분의 10(단, 제3호는 1천분의 50으로 본다)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매자금융 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여금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기여금과 별개로 부과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그밖에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사업청은 재정경제부에서 방산을 포함한 전략수출분야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가칭)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예정인 상황에서 별도 기금 신설시 방산업체에 부담금이 이중부과되어 업

체의 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라) 기금의 운용주체의 적정성

- 제정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 ‘국방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 기금이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사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제정안 제12조의 기금의 용도로 나열된 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차보전 등 재정사업과 방산펀드사업의 지원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앞의 재정사업 등의 운영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관리 주체를 국가유산보호기금⁴⁰⁾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2025년 기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총 67개 기금이 운용중이고,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외청인 국가유산청이 운용 중인 국가유산보호기금 외 나머지 66개 기금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운용 중임.⁴¹⁾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전력증강정책에 있어 첨단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국방부가 담당하며, 새로운 기술개발은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되며, 군의 소요 결정, 미래 전장평가, 운용경험의 환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40)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참고자료 1. 2025년도 기금 운용 현황 자료

(마) 관계부처 의견

- 국방부는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 진흥 등에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수출 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제정안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현재 방위산업 분야 지원을 포함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안 간 상호 충돌,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제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위사업청은 현재 운용 중인 이차보전사업, 2026년부터 신설·운용되는 정책펀드(방산기술혁신펀드, K-방산수출펀드)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등 타부처 기금·펀드와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투자 및 사업관리 역량 분산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제정안의 기금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정지원 제도와 기금의 용도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소 결

- 최근 글로벌 안보 불안과 무기수요 증가로 방산수출 경쟁이 격화

되는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금융 한도 규제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기존 예산·정책금융만으로는 대규모·반복적 수출계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방산수출 등에 특화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저리 융자·보증 등 종합적 금융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임.

- 다만, 기존 이차보전제도·정책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중복·충돌에 따른 기능 조정 문제, 최근 논의중인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 부담금의 과도성, 관리·운용주체의 적정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조문별 검토

제정안	검토의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 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4. “일반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를 말한다. 5.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를 말한다.	□ 제1조 및 제2조는 일반적인 목적 및 정의 규정임

제정안	검토의견
6. “국방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	□ 제3조 기금의 설치 □ 제4조 기금의 재원 □ 제5조 부담금 부과 관련 검토(29페이지 참조) ○ 다른 입법례나 「전략수출

제정안	검토의견
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	금융기금에 관한 법률안」의 기여금과 비교하여 고액의 부담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닌 ‘결산상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제정안	검토의견
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차입금)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제6조 이의신청 □ 제7조 차입금 □ 제8조 기금의 용도 관련 검토(21페이지 참조) ○ 제1호 자금용자 사업과 제2호 이자차액지원 사업:

제정안	검토의견
1. 방위산업체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다.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바.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 사. 방위산업체의 운영 아.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자.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희화된 방위산업물자등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차.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방위산업체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 3. 방위산업체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과 지원대상 및 용도가 같음.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 방지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이차보전사업은 폐지되거나 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사업조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3호 및 제4호 대출보증사업: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방산업체등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은 없으나, 방산 수출과 관련하여 방산업체등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음. 제정안의 기금 신설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할 경우 대출보증 기관 다양화로 방산업체등의 보증료 부담 감면 등의 효과가 얻을 수는 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기능

제정안	검토의견
4. 방위산업체등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사항을 위하여 구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	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5호 투자지원 사업: 방위사업청에서 운영중인 K-방산수출펀드(예산사업), 방산기술혁신펀드(비예산사업) 등과 유사한 내용임.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정책펀드의 기능이 기금에 포함되거나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및 정비가 함께 필요함. ○ 한편, 각호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금유자를 지원하는 ‘연불수출금융 등 장기대출·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방산실무에서 수입국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중요한 협상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고, 수출국 정부가

제정안	검토의견
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사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동 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용도에 동 사업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20페이지 및 26페이지 참조) □ 제9조 국방부장관의 기금 관리·운용 주체 관련 검토(34페이지 참조) ○ 제12조의 기금의 용도로 나열된 사업들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차보전 등 재정사업과 방산펀드사업의 지원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재정사업 등의 운영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관리 주체를 국가유산보호기금⁴²⁾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2025년 기준, 정부 예산이

제정안	검토의견
거쳐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수탁기관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 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	투입되는 총 67개 기금 중 국가유산보호기금 만 외청이 운용중임. ○ 국방부의견: 국방부장관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제10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제11조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제12조 회계연도 ☐ 제13조 회계기관 ☐ 제14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정안	검토의견
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 제17조(감독 및 명령)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6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처리 ☐ 제16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17조 위탁사무 감독 및 명령 ☐ 제18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정안	검토의견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 제19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처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료 부분 함께 개정

제정안	검토의견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의 10분의 1의 경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312

- 42)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2025년도 기금 운용 현황 자료

순번	기금명	소관부처
1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2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3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4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5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7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8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9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10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1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12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13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4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15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16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17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19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3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4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순번	기금명	소관부처
25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27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29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30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3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33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3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36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3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8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3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40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41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2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44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46-1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2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48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4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5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순번	기금명	소관부처
5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52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53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56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57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58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9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60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6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6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63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6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65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6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6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2.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상품(대출보증 포함) 현황

□ 수출입은행 금융상품

구분	대 출	보 증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수출	수출촉진자금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앞 시설 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수출금융보증 수출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하는 보증서를 발급
	수출성장자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생산 및 제작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앞 수입결제자금 또는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앞 시설·운영자금 지원		
수입	수입자금 국가 경제의 성장,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금융보증 수입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보증	수입이행성보증 수입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하는 보증서를 발급
	수입금융보증 수입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보증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의 지원대상자 및 동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거래상대방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해외진출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 앞 자본금 출자 또는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앞 대여금 등 지원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거래에 자금을 대출하	

구분	대 출	보 증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해외사업자금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업 영위 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앞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해외사업 관련거래 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지원		해외사업이행성보증 해외사업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하는 보증서를 발급
긴급경영자금	긴급경영자금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수출증진, 수입기반마련,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자금 지원		
간접대출	전대금융 신용한도 설정이 체결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해외온렌딩 온렌딩 약정이 체결된 국내 금융기관(해외법인 포함)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무역보험공사 금융상품

주요종목		주요내용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외상 수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
	수입보험	선금금 미회수 시 또는 자원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후 대출금 미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신 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중소·중견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중소·중견기업이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화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매입)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수입자 제한 없음)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는 제도
중장기 성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 등을 담보하는 제도
	해외사업 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계약 체결 후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해외투자보험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위해 투자한 주식, 대출금의미 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서비스종합보험	서비스 거래 수출 후 대금 미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행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

주요종목		주요내용
		이행청구를 받아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기반보험	외화획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설비의 도입과 관련, 금융기관의 금융계약 체결 후 대출원리금 미상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